

조선후기 상인 조직의

인원 구성과 변동

저산팔읍 상무우사의 사례 분석

조영준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부교수, 한국경제사 전공
cho06@snu.ac.kr

- I. 저산'팔읍'과 '보상'의 조직
 - II. 『청금록』의 자료적 특성
 - III. 저산팔읍의 관할 지역과 장시망
 - IV. 조직의 구성원과 직책
 - V. 구성원의 양적 변동
 - VI. 구성원의 연속성 검토
 - VII. 조직의 성격에 대한 역사적 평가
-

이 논문은 2018년도 한국학중앙연구원 호혜와 협동의 계보학, 조선시대 사회조직과 공동체의 운영원리 과제로 수행된 연구임(과제번호 AKSR2018-RC01).

I. 저산·팔읍과 ‘보상’의 조직

저산팔읍(苧産八邑)이란 충청남도 서남부 지역에서 모시(苧)가 많이 생산되는 여덟 고을을 통칭하는 표현이다. 이 지역에서는 조선후기 이래로 ‘보부상’의 조직이 결성되어 근대 이후에 이르기까지 유지되었는데, 보상(祿商)과 부상(負商)이 각각 단체를 만들어 상호 독립적으로 운영되었다. 그 중에서 보상의 조직을 이른바 저산팔읍 상무우사(商務右社)라 하였고, 일찍이 1958년에 유원동(劉元東) 교수에 의해 선구적 연구가 제출된 바 있다.¹ 그로부터 무려 60여 년이 경과하였지만, 저산팔읍 상무우사의 실체에 대해 알려진 내용은 그다지 많지가 않다.

자료의 현존 상황을 기준으로, 보부상의 조직은 충청남도에 집중적으로 전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예덕상무사(예산·덕산·면천·당진), 원흥주육군 상무사(홍성·대흥·보령·청양·용호·광천), 저산팔읍 상무우사 및 상무좌사(부여·홍산·임천·남포·정산·한산·서천·비인), 기타(온양·신창·평택·아산·둔포·곡교) 등 몇몇의 권역으로 구분된, 각 조직이 남긴 기록이 학계에 소개되거나 연구된 바 있다. 같은 충청도이지만 충청북도의 경우에는 청주의 자료가 확인되고 있을 뿐이다. 충청도 이외의 지역 중에는 경상도에 자료가 많이 남아 있는데, 경남에는 창녕, 진주, 울산, 함천, 함양, 기장 등의 지역이, 경북에는 고령, 울진, 경주 등의 지역이 대표적이다. 그밖에는 경기(용인, 수원), 강원(홍천, 원주, 태백), 함남(북청) 등에 대한 자료를 찾을 수 있으나, 충청·경상 지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소략하다.

1 劉敎聖, 「忠淸右道苧産八邑 商務社右社: 李朝末期 祿負商의 組織과 機能에 對한 一考察」, 『歷史學報』第10輯(1958), 167-196쪽; 劉元東, 『李朝後期 商工業史 研究』(韓國研究院, 1968), 43-58쪽 및 劉元東, 『韓國近代經濟史研究』(一志社, 1977), 180-198쪽에 재수록된 바 있음.

이처럼 각 지역별로 적지 않은 자료가 남아 있지만, 전체 지역을 아우르면서 지역별 차이점에까지 주목한 연구 성과는 찾아보기 어렵다.

충청남도 지역의 보부상 조직에서 확인할 수 있는 특수성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자료의 깊이 있는 이해가 필수적이다. 민속원이 간행하여 보급한 『보부상자료집(保負商資料集)』(天·地·人·續)이라는 시리즈에 일부 자료가 영인·수록된 바 있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제대로 검토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한계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사전 작업의 일환으로서, 최근 들어 예덕상무사와 저산팔읍 상무우사에 대한 전체 자료의 탈초·번역 및 해설이 이루어진 바 있다.² 이러한 고무적 상황에 힘입어, 이 논문에서는 저산팔읍 상무우사에 대한 심층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한국 상업사 연구의 진전을 꾀하고자 한다.

저산팔읍은 부여·홍산·한산·임천·서천·비인·남포·정산(또는 은산) 등을 포괄한다. 지금도 ‘한산 모시’가 지역의 대표적 특산물로서 널리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전통적 수공업으로써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다. 조선후기 이래로 충청도에서, 특히 이들 지역에서 모시가 생산·유통되었음은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임원경제지』에는 19세기 중엽에 저산팔읍의 장시(場市)에서 어떤 품목이 거래되었는지 기록되어 있는데³, 한산·홍산·비인·남포·부여·임천의 여섯 고을에 대해 ‘저포(苧布)’가 거래 품목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정산에 대해서는 관련 기록을 찾을 수 없다.⁴ 그런데, 『임원경제지』의 전체를 통틀어 전국적으로 확인

2 조영준·심재우·양선아·전경목 역해, 『장돌뱅이의 조직과 기록: 예산·덕산·면천·당진 편』(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5); 조영준·김봉좌·오창현 역해, 『장돌뱅이의 조직과 기록: 저산팔읍 상무우사 편』(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9).

3 서천(舒川)은 원문에서 누락되어, 실제로는 일곱 고을의 거래 품목에 대해서만 확인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하여, 조영준·김봉좌·오창현 역해(2019), 앞의 책, 32-33쪽을 참조하라.

4 조영준·김봉좌·오창현 역해(2019), 앞의 책, 34쪽.

표1-19세기 중엽 전국 장시의 거래 품목(발체)

	경기	충청	전라	경상	강원	황해	평안	함경	계
면화(棉花)	5	11	28	32	6	19	32	2	135
면포(綿布)	32	10	40	68	24	23	42	14	253
마포(麻布)	20	9	23	49	21	15	-	13	150
저포(苧布)	-	6*	19	14	-	3	1	-	43
명주(明紬)	-	2	8	14	8	5	9	-	46

주: * 한산·홍산·비인·남포·부여·임천의 여섯 고을.

출처: 『임원경제지』.

해 보면, 표1에서 볼 수 있듯이 ‘저포’가 거래된 지역이 총 43곳이며, 그 중에서 전라도가 19곳, 경상도가 14곳, 충청도가 6곳, 황해도가 3곳, 평안도가 1곳임이 확인된다. 이를 통해, 충청남도에서 한산·홍산·비인·남포·부여·임천의 여섯 고을에서만 모시가 유통되었고, 이외의 지역에서는 유통 여부가 확인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바로 그 점이 저산팔읍으로 하여금 하나의 단일한 시장권(市場圈)으로 형성되게끔 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의 시장권 내에 하나의 조직이 결성되었던 것이 아니라 보상과 부상의 조직이 각기 별도로 형성되어 운영되었다. 즉, 우사(右社)와 좌사(左社)의 구분이 명확하였고, 현재까지도 자료가 별도로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통상적으로 우사가 붓짐장수(襪商), 좌사가 등짐장수(負商)를 가리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저산팔읍에서는 반드시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다음 인용문을 보면, 저산팔읍에서는 좌고(坐賈)를 가리켜 우사라 하고, 행상(行商)을 가리켜 좌사라고 했음을 알 수 있다. 즉, 우사와 좌사의 구별은 단순히 취급 품목이나 운반 방법의 차이에만 의거한 것이 아니며, 판매 방식의 차이도 기준이 되었던 것이다. 이는 보상·부상이 모두 행상의 범주에 속한다고 알려진 상식과 거리가 있으며, 저산팔읍 상무우사가 행상이 아닌 좌고의 조직으로 파악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좌사는 오로지 행상으로 주를 이루니 길에서 물건을 거래하여 마을에서 돌아다니며 파는 사람들이요, 우사는 오로지 앉아서 파는 상인들로 주를 이루니 장사에서 물건을 내다 파는 사람들이다.⁵

그렇다면 충청남도의 여러 보부상 조직 중에서 저산팔읍 상무우사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저산팔읍 상무우사는 충청남도 내의 다른 지역에서 활약한 조직보다 시기적으로 앞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저산팔읍 상무우사는 1845년 3월에, 원홍주육군 상무사는 1851년 4월에, 예덕상무사는 1851년 7월에 창설되었기 때문이다. 경상북도 고령의 좌사계가 1866년에 창설되었고, 다른 도의 나머지 지역에서도 1850년대 또는 그 이전에 창설된 사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산팔읍 상무우사의 조직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창설된 ‘최고(最古)’의 단체임을 알 수 있다.

예전에는 이런 사실이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는데, 기존 연구 중 일부에서 원본 자료에 기재된 ‘을사(乙巳)’의 연도를 잘못 비정(比定)하였기 때문이다. ‘을사’년은 한동안 1905년으로 오해되었고, 이에 저산팔읍 상무우사는 원홍주육군 상무사나 예덕상무사에 비해 그 역사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어왔다. 하지만 『청금록』⁶, 「채정첩(差定帖)」 등의 다양한 자료를 대조한 결과, ‘을사’년이 1905년보다 60년이 앞선 1845년임이 분명해졌다.⁷

또한 저산팔읍 상무우사가 언제부터 저산‘팔읍’이라는 여덟 고을을 아우르는 조직이었는지, 즉 ‘8읍’의 역사성에 대해서도 그간 면밀한 고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존하는 「채정첩」 25건을 활용하여 저산팔읍 상무우

5 조영준·김봉좌·오창현 역해(2019), 앞의 책, 252-253쪽.

6 청금록의 한자 표기는 ‘靑衿錄’과 ‘靑襟錄’이 혼용된다.

7 조영준·김봉좌·오창현 역해(2019), 앞의 책, 18쪽.

사의 초기 조직을 복원한 결과에 따르면⁸, 조직의 창설 초기인 1845년에는 '상고 좌상(商賈座上)'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고⁹, 직책 간의 위계(hierarchy)가 좌상(座上)-공원(公員)-유사(有司)-집사(執事)의 네 층위로 이루어져 있으며¹⁰, 관할 지역이 한산·비인·홍산·부여의 네 곳이었다. 그러다가 이후에 관할 지역이 확대되면서 '8읍'이 형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채정첩」에 따르면 1850년에 남포가 추가되어 '5읍'이 되고, 1851년에 서천이 추가되어 '6읍'이 되었다. 이후 1872년에 임천이 추가되어 '7읍'이 되었고¹¹, 1903년에 정산이 추가되어 비로소 '저산팔읍'이라는 표현이 최초로 등장하게 되었다.¹² 이 논문에서는 이와 같이 '저산팔읍'이 형성되는 과정에 해당하는



자료1-1845년에 발행된 저산팔읍 상무우사의 「채정첩」

주: 제시된 2건의 「채정첩」은 모두 1845년 6월에 이직우(李直偶)를 상고(商賈) 좌상(座上)으로 임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왼쪽 자료는 한산군수(韓山郡守)가, 오른쪽 자료는 비인현감(庇仁縣監)이 발급한 것이라는 차이가 있다.

출처: 국립부여박물관.

- 8 조영준·김봉좌·오창현 역해(2019), 앞의 책, 36쪽.
- 9 이러한 표현은 다른 자료에서는 찾을 수 없고, 오직 저산팔읍 상무우사의 「채정첩」에서만 보인다.
- 10 그보다 아래 층위의 '동몽(童蒙)' 또는 '대방(大房)' 및 '비방(裨房·俾房)'은 나중에 등장한다.
- 11 조영준·김봉좌·오창현 역해(2019), 앞의 책, 27쪽.
- 12 조영준·김봉좌·오창현 역해(2019), 위의 책, 29쪽.

19세기의 1845-1899년을 집중적으로 분석하되, 『청금록』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¹³

II. 『청금록』의 자료적 특성

이 논문의 분석 대상인 저산팔읍 상무우사의 『청금록』은 그리 흔한 자료가 아니다. 그간 보부상과 관련하여 『청금록』의 존재가 널리 알려진 지역은 원홍주육군 상무사가 유일했으며¹⁴, 예덕상무사에는 『청금록』이 현존하지 않는다. 저산팔읍 상무우사의 『청금록』은 일찍이 유원동 교수에 의해 학계에 소개된 바 있으나,¹⁵ 그 내용에 대한 분석은 아직까지 전혀 이루어진 바 없다. 그러므로 이 논문은 저산팔읍 상무우사의 『청금록』을 최초로 소개하고 분석하는 사례에 해당한다.

이 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청금록』의 원본은 현재 행방이 불명한 상태이며, 개인이 소장하던 중에 어디론가 사라져 찾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한다. 게다가 소장자가 최근에 사망하여, 원본의 확보 가능성은 더욱 낮아진 상황이다. 하지만 다행히도 분실 전에 복사해둔 것이 남아 있고, 그것을 통해 전체 내용의 파악이 가능하므로, 원본을 대신하여 사본을 활용한 분석을 진행할 수 있다.¹⁶ 『청금록』의 사본에는

13 이 논문에서 분석하는 『청금록』은 조영준·김봉좌·오창현 역해(2019), 앞의 책에 수록되지 않은 것이다.

14 이와 관련해서는 조영준, 「19-20세기 보부상 조직에 대한 재평가: 元洪州六郡商務右社를 중심으로」, 『경제사학』 제47호(2009), 39-77쪽을 참조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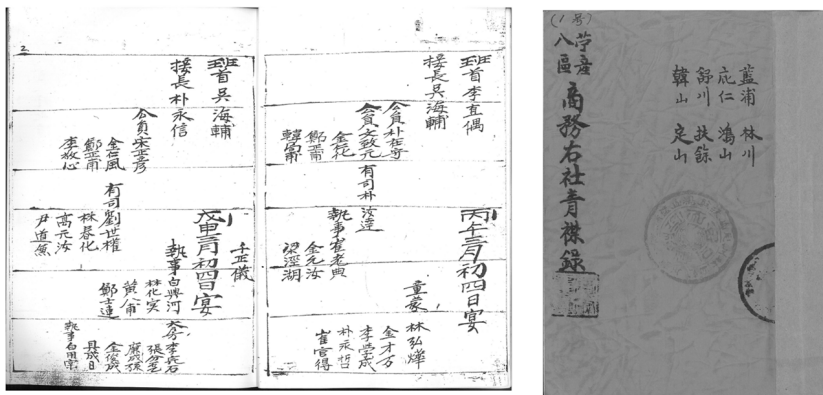
15 劉敎聖(1958), 앞의 논문, 170쪽.

16 또한 이 논문에서는 필요에 따라 조영준·김봉좌·오창현 역해(2019), 앞의 책에 소개된 고문서를 추가로 분석하였다.

일부 내용에 착간(錯簡)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문제는 원본이 확보되지 않는 현재 상황에서는 당장 해결하기 어렵다.

저산팔읍 상무우사의 『청금록』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우선, 분석 대상 기간인 1845-1899년 동안, 1847년과 1855년의 두 해를 제외한 모든 연도에 대해 기재되어 있다. 원홍주육군 상무사의 경우, 1851년에 최초로 기재된 이후, 1865년까지는 공백이 있고, 1866년에 들어서부터 거의 해마다 명단이 작성되었다는 점과 대조적이다.¹⁷ 수록 정보의 연도별 완비도(completeness) 측면에서 저산팔읍 상무우사의 사례가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하겠다.

또한 저산팔읍 상무우사의 『청금록』에는 기록된 각 인원의 상하 관계가 형식적으로 구분되어 있다. 원홍주육군 상무사의 사례에서 4층의 위계가 단(段)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것과 유사하다.¹⁸ 예덕상무사의 경우에는



자료2- 저산팔읍 상무우사의 『청금록』 (사본)

출처: 고(故) 황원하 자택.

17 이와 관련해서는 조영준(2009), 앞의 논문, 57쪽을 참조하라.

18 이와 관련해서는 조영준(2009), 위의 논문, 44쪽, 60쪽을 참조하라.

『청금록』이 없고 「좌목(座目)」만 현존하는데, 거기에는 단의 구분이 없다.¹⁹ 그렇다면 저산팔읍 상무사의 사례는 원흥주육군 상무사와 예덕상무사의 중간적 성격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청금록』의 기재와 관련하여 한 가지 더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용지의 단수가 도중에 6단에서 5단으로 바뀐다는 점이다. 최초 작성된 1845년부터 줄곧 6단으로 인찰(印札)된 용지가 사용되었는데, 1894년에 5단으로 변경되었다. 단을 구분해 놓고는 단을 기준으로 기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단의 변경 이유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앞에서 착간의 문제를 언급하였는데, 그밖에도 『청금록』에서 확인되는 내용을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음을 미리 지적해 두고자 한다. 『청금록』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에서 아래로’라는 기준으로 시간 순서에 따라 기재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하면서도, 여백의 곳곳에 추가로 기록한 내용이 다수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기재상의 특성으로 인해, 각각의 내용에 대해 선후 관계나 연결 관계를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재된 인물을 시기별로 대조하는 방법으로 보완해야 한다.

자료2에서도 확인되듯이, 『청금록』에는 기재한 날짜의 아래에 각각 ‘연(宴)’이라는 표현이 적혀 있다. 이는 『청금록』의 작성이 연례적으로 1회 개최된 ‘총회’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 자료적 성격이 출석부 또는 방명록(芳名錄)임을 의미한다. 『청금록』에 따르면, 총회의 개최 시기는 1845년부터 1891년까지는 3월 4일이었고, 1892년 이후로는 3월 14일이었다. 이렇게 총회의 날짜가 바뀌게 된 계기와 관련하여, 아래 인용문을 참고할 수 있다.

19 이와 관련해서는 조영준, 「조선후기 行商 조직의 座目과 인원 변동: 禮德沔唐과 京都所·京都廳의 사례」, 『藏書閣』 제44집(2020), 255-256쪽에서 논의한 바 있다.

처음에 3월 초 4일로 총회 날짜가 정해진 기원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어쩐 일인지 1891년까지 총회 때마다 거의 매번 비가 내렸다고 한다. 그래서 천문에 능통한 인사가 있어서, 3월 14일로 고치면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였고, 그 이듬해인 1892년부터는 3월 14일로 정해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4일이나 14일의 '4'로 된 것은 장(市)이 서는 것과 기타 모든 사정으로 보아서 집회를 하기에 편한 날로 택한 것이라고 한다.²⁰

Ⅲ. 저산팔읍의 관할 지역과 장시망

『청금록』은 기본적으로 인원 명단이지만, 거기에는 지역에 관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다. 『청금록』의 초기 기록에서는 지명이 등장하지 않지만, 어느 시점부터 특정의 지역이 기재되기 시작한다. 이는 8읍을 아우르게끔 조직이 확대되고 안정화되면서 인원의 파악 과정에서 지역을 구분할 필요가 생겼기 때문일 것이다. 『청금록』에 나타난 지명 정보를 분석하게 된다면, 앞에서 거론한 저산·팔읍의 역사성에 대해 실증적으로 다시 검토해 볼 수 있다.

예컨대, 각 지역 명칭이 처음 기재된 '초출(初出)' 연도를 확인함으로써, 조직의 관할 범위가 확대된 상황에 대해서 검증해볼 수 있다. 가장 먼저 기재된 지역은 은산·홍산으로서, 1850년부터 확인되고, 이후 1899년에 이르기까지 거의 해마다 지명의 기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어서 등장한 지역은 비인·남포·서천이며, 1852년에 최초로 등장한다. 그 다음은 정산(1868년), 임천·부여(1884년), 한산(1888년) 순이며, 총 아홉 고을이 1888년

20 朴元善, 『負祿商: 韓國 商法史上의 行商制度研究』(韓國研究院, 1965), 145쪽.

이전에 모두 『청금록』에 등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검토 결과를 포함하여, 전체 기간에 대해 『청금록』에 지명이 기재된 상황을 정리하면 그림1과 같다.

그림1을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현상 중의 하나는 한산과 부여가 기재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는 『청금록』 상의 지명 기재가 전체 조직의 통상적 인원보다는 '별도'로 관리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즉, 홍산·은산과 같이 장기적으로 기재가 꾸준히 관찰되는 지역은 전체 조직의 중심적 인원 외에 독자적 조직이(다른 말로 하자면, 분리된 조직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는 저산·팔읍이 그 자체로서 하나의 거대한 권역임과 동시에, 하부에 몇몇으로 분할된 세부 권역이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징은 『청금록』 상에서 '은홍(恩鴻)', '비람(庇藍)', '비람서(庇藍舒)', '비람한서(庇藍韓舒)' 등과 같이 몇몇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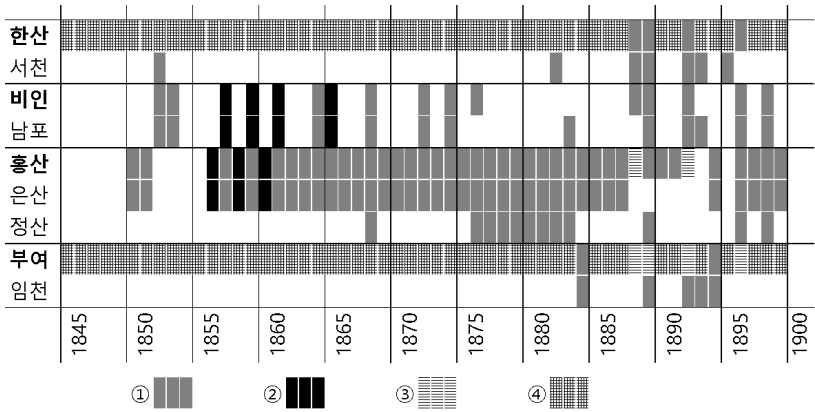


그림1-『청금록』의 시기별 지명 기재 여부, 1845-1899

주: ① 지명이 기재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② 해당 지역이 해당 연도의 가장 앞에 기재되어 있음을 나타내며, 대표성을 인정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③ 해당 지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특정 사유에 의해 연속성을 추정할 수 있는 연도에 해당한다. ④ 해당 지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전체 조직의 대표 지역(default)에 해당하는 것이리라 추정한 것이다. ⑤ 위와 같은 추론에 근거하여 4대 중심지에 해당하는 지역을 굵은 글씨로 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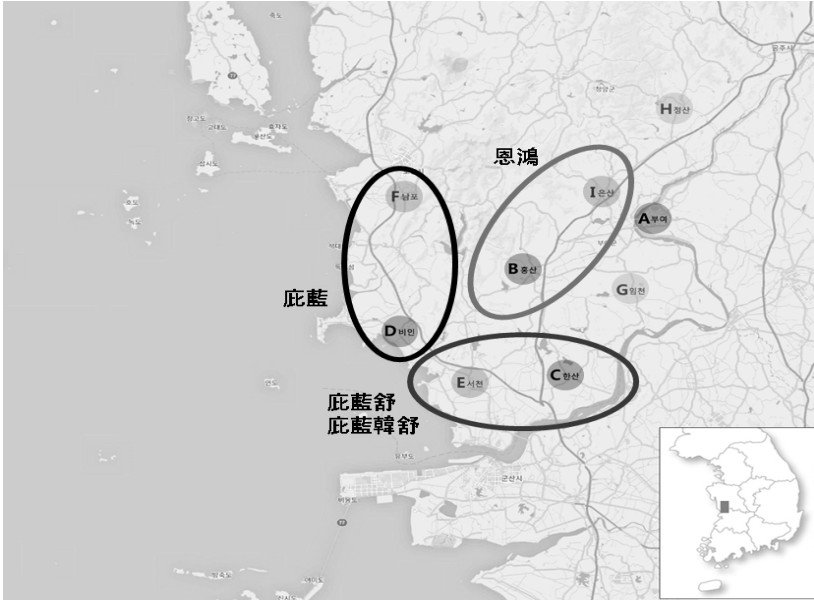


그림2-저산팔읍의 지역별 권역화

을 묶어서 표현하는 사례가 등장한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그러한 정보를 종합하게 되면, 전체 지역을 그림2와 같이 각 권역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그림2와 같은 권역화(grouping)의 타당성은 기존 연구에서 “윗 4골과 아랫 4골의 두 계통”에 대해 소개한 다음의 인용문을 통해서도 찾을 수 있다. 상권(商圈)이 남동과 북서로 양분되어 있었고, ‘5·10’장이 없었다는 이야기인데, 『동국문헌비고』 및 『도로고』를 통해 확인되는 18세기 중엽 저산팔읍의 장시 현황에서 각 고을의 읍내장을 기준으로 하면, 그대로 들어맞음을 알 수 있다.²¹ 이 인용문을 토대로 당대의 행상이 날짜별로 이동하였을 경로를 재구성해 보면, 그림3과 같다. 그림3에서 실선은 야음을

21 조영준·김봉좌·오창현 역해(2019), 앞의 책, 32쪽을 참조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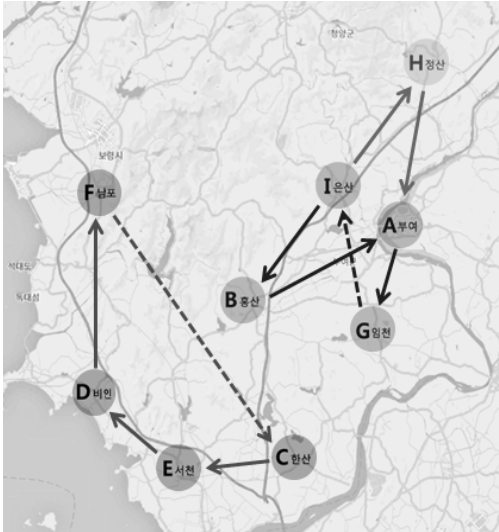


그림3-윗 고을과 아랫 고을의 장시망(場市網)
 주: 각 고을의 장시는 읍내장(邑內場)을 기준으로 한 것임.

틈타 이동하는 행상의 여정을 나타내며, 점선은 장사를 쉬는 '5·10'일의 이동을 가리킨다.

윗 4골에서는 은산(恩山)이 1일장(一日場), 홍산(鴻山)과 정산(定山)이 2일장, 부여(扶餘)가 3일장, 임천(林川)이 4일장이다. 아랫 4골에서는 한산(韓山)이 1일장, 서천(舒川)이 2일장, 비인(庇仁)이 3일장, 남포(藍浦)가 4일장이다.²²

그림1의 지명 기재 현황에서 확인되는 또 하나의 사실은, 정산이나 임천이 조직의 확대에 따라 추가되는 시기가 앞에서 「채정첩」을 통해 확인한 것과 다르다는 점이다. 앞에서는 1872년에 임천이, 1903년에 정산이 추가되었다고 하였으나(「채정첩」), 그림1에서는 1868년에 정산이, 1884년에 임천이 등장하고 있다(『청금록』). 이는 현존하는 「채정첩」의 정보만으로 조직의 권역 변화에 대해서 분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인데, 달리 생각해 보면, 「채정첩」의 내용이 실증적 근거로서 활용되기에 충분하며 시대적 하한(下限)으로서의 의의를 가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정산이나 임천이 다른 지역에 비해 꽤 늦은 시기에 조직의 범위에 포괄되었다는 사실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하겠다.

22 朴元善(1965), 앞의 책, 145쪽.

IV. 조직의 구성원과 직책

앞에서 통상적으로 우사는 봇짐장수(褌商)를, 좌사는 등짐장수(負商)를 가리키지만, 저산팔읍에서는 좌고(坐賈)를 가리켜 우사라 하고, 행상(行商)을 가리켜 좌사라고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저산팔읍에서 현재까지 분리되어 있는, 상무우사는 좌고의 조직이고, 상무좌사는 행상의 조직인지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자. 특히 저산팔읍 상무우사의 조직이 좌고를 중심으로 한 것인지 분명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료상에 전호(廩號)가 등장하는 지의 여부를 검토해보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우선 조직이 창설되기 전부터 작성된 각종의 고문서를 통해 1839년, 1841년, 1842년, 1843년, 1846년, 1850년 등의 사례에서 지상(紙商) 또는 지전(紙廩), 죽립전(竹笠纏) 등의 전호가 확인됨을 알 수 있다.²³ 그러므로 이들 좌고가 조직이 만들어지던 단계에서부터 깊이 개입되어 있었음이 분명하다. 하지만 『청금록』 상에서 1850년대부터 1880년대 초에 이르기까지 전호가 등장하는 사례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이는 대다수의 구성원에 대해서 좌고 여부에 대한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함을 의미한다.

『청금록』에 전호가 등장하는 것은 1884년 이후에 들어서이다. 전호의 기재 사례는 대개 포목 가게 또는 담배 가게로서 표2와 같이 총 4종이 확인된다. 이렇게 전호가 기재되었다는 사실은 저산팔읍 상무우사의 조직이 좌고와의 연관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창설 초기에 종이(紙)나 죽립(竹笠) 등이 관계되었던 것과 달리, 30년이 경과한 뒤에 포목이나 담배를 취급한 전호만 확인된다는 점에서, 조직의 질적 연속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님을 알 수가 있다.

23 조영준·김봉좌·오창현 역해(2019), 앞의 책, 45-80쪽.

‘우사’의 구성원 중에서 ‘좌고’로서의 특성이 드러나는 사례를 전호의 기재 여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은 충청남도의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기존 연구를 취합하여 다시 살펴보도록 하자. 우선 예덕상무사의 경우에는 「좌목」의 분석을 통해 백목전(白木塵: 1881년, 1885년), 어곽전(魚藿塵: 1885년), 철물전(鐵物塵: 1885년), 남초(南草: 1888년), 목화전(木花塵: 1888년)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²⁴, 이를 통해 예덕상무사가 기본적으로 보상의 조직이면서도, 통상적으로 부상이 취급한 품목으로 알려진 사례까지 기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예덕상무사의 사례에서는 전호가 부기된 경우가 저산팔읍 상무우사에 비해 그리 많지 않으며, 시기도 상대적으로 단기에 그치는 등 제한적이다.

원흥주육군 상무사의 경우에는 『청금록』의 분석을 통해 청저전(靑苧塵: 1913년), 저전(苧塵: 1913년), 고무화전(고무靴塵: 1932년), 목물전(木物塵: 1933년), 염전(鹽塵: 1933년) 등이 기재되었음을 알 수 있다.²⁵ 원흥주육군 상무사에서는 20세기에 들어서야 전호가 나타나며, 그마저도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는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저산팔읍 상무우사나 예덕상무사에 비해 전호의 기재가 훨씬 소략했던 것이다.

저산팔읍 상무우사의 창설을 전후로 한 시기에 확인되는 전호와 1880년

표2- 『청금록』에 등장하는 전호(塵號)의 용례와 출현 시기

	연도							
	1884	1888	1889	1891	1892	1897	1898	1899
포목전(布木塵)	○	○		○	○	○		
남초전(南草塵)	○	○				○	○	○
백목전(白木塵)			○	○	○	○	○	○
청저전(靑苧塵)					○	○	○	○

24 조영준·심재우·양선아·전경목 역해(2015), 앞의 책, 43쪽.

25 조영준(2009), 앞의 논문, 61쪽.

대 이후에 나타나는 전호가 거의 일치하지 않음을 통해 조직의 질적 연속성이 확보되지 않는다고 이해할 수 있다면, 그 이유는 과연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수 있는 점은 창설 초기의 「채정첩」에서 유학(幼學: 1845년), 한량(閑良: 1850년, 1851년, 1854년) 등의 직역(職役)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경향은 『청금록』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인할 수 있는데, 무산부사(茂山府使: 1889년), 출신(出身: 1891년), 동래수사(東萊水使: 1891년), 전전라중군(前全羅中軍: 1891년, 1893년, 1894년), 감찰(監察: 1894년, 1896년), 도사(都使: 1894년), 전사천군수(前泗川郡守: 1894년), 오위장(五衛將: 1894년), 진사(進士: 1894년), 함안군수(咸安郡守: 1895년), 남포군수(藍浦郡守: 1896년), 전도사(前都事: 1896년, 1897년), 전주사(前主事: 1897년), 전주서(前注書: 1897년) 등으로 구체적인 직역 정보가 다양하게 등장한다.

이러한 경향을 (19세기에 한정하여) 충청남도의 다른 지역에서 확인해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의 현상을 확인할 수가 있다. 예덕상무사의 경우에 「좌목」에서 동지(同知), 오위장(五衛將), 유학(幼學), 출신(出身), 한량(閑良), 첨지(僉知), 도정(都正) 등이 보이고²⁶, 원홍주육군 상무사의 경우에 『청금록』에서 전참판(前參判), 전도사(前都事), 절충(折衝), 전군수(前郡守), 출신(出身), 동지(同知), 현감(縣監), 전참봉(前參奉), 전중군(前中軍), 전주사(前主事), 전오위장(前五衛將), 전감찰(前監察), 전사용(前司勇), 전중부도사(前中府都事) 등이 보인다.²⁷

창설 초기의 유학이나 한량이 반드시 ‘양반’은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으나(사실상 상인), 1880-90년대 이후의 인물들은 아무래도 상인이라

26 조영준·심재우·양선아·전경목 역해(2015), 앞의 책, 41쪽.

27 원홍주육군 상무사의 『청금록』은 현재 청양군의 백제문화체험박물관에 기탁되어 있다.

고만 보기에는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사실상 ‘양반’). 이 시기에 조직이 질적 연속성을 잃고서 ‘변질’되는 현상의 원인에 대해서 중앙조직과의 관련에 주목한 사례도 있다.²⁸ 변질의 구체적 양상에 대해서는 양적으로도 검토될 필요가 있으며, 뒤에서 절을 바꾸어 다시 추가적으로 분석한다.

양적 분석에 앞서, 저산팔읍 상무우사의 조직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직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저산팔읍 상무우사의 『청금록』을 살펴보면, 조직의 구성원이 여러 가지 직책을 가지고 있었음이 드러난다. 전체 직책의 가짓수는 대략 39개 정도인데, 충청남도의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많다고 하기는 어렵다. 표3은 대표적 직책의 종류를 위계에 따라 구분하여 정리한 것이다.

표3에 제시한 모든 직책이 전체 시기에 걸쳐 존재하거나 균일하게 분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초기에는 직책의 종류와 구성이 꽤나 단순했던 반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직책이 창출되었다. 표4는 조직 내 직책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세분화되어 갔는지를 보여준다. 초창기에 비해 1880년대에 공원 급의 종류가 다양해졌음을 알 수 있고, 1890년대에는 접장 급의 종류 역시 다양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4의 여러 직책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역시 접장(接長)이다. 조직의 우두머리인 접장은 그 임기가 1년이었으며, 접장을 역임한 다음에 반수(班首), 영위(領位) 등의 고문직을 맡는 것이 관례였다. 이러한 임기와 관례는 저산팔읍 상무우사뿐만 아니라 충청남도의 다른 지역에서도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것이었고, 대개는 「선생안(先生案)」이라는 문건에 역대 접장의 명단이 순서대로 기재되었다. 그런데 다른 지역과는 달리 저산팔읍 상무우사에서는 「선생안」이 현존하지 않아서, 접장의 임명과 교체를 한 눈에

28 중앙조직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조영준, 앞의 논문(2020), 267-268쪽에서 시론한 바 있다.

표3- 저산팔읍 상무우사의 대표적 직책

위계 구분	사례
접장 급	- 도영위(都領位), 영위(領位), 시영위(時領位), 부영위(副領位) - 도반수(都班首), 반수(班首), 명사반수(明查班首), 시재반수(時宰班首) - 접장(接長), 부접장(副接長)
공원 급	- 부장무원(副掌務員) - 도공사장(都公事長), 공사장(公查長), 부공사원(副公事員) - 도명사장(都明查長), 명사장(明查長) - 도공원(都公員), 공원(公員)*, 별공원(別公員), 문서공원(文書公員), 본방공원(本房公員), 상공원(上公員), 서기공원(書記公員), 한산도공원(閑散都公員) - 유사(有司)*, 임전유사(任錢有司), 수전유사(收錢有司), 재무원(財務員) - 소임(所任), 부임(副任)
집사 급	- 도집사(都執事), 집사(執事)*
동몽 급	- 동몽(童蒙), 대방(大房), 공원(公員)*, 집사(執事)*, 유사(有司)*, 비방(裨房)

주: * '동몽 급'의 공원, 집사, 유사는 '공원 급' 또는 '집사 급'의 동일 직책 명칭과 명확히 구별되는 별개의 직책이다.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청금록』을 활용하여 「선생안」을 재구성해보고자 하였다. 표5는 그렇게 복원한, 가상의 「선생안」이다.

표5에서 확인되는 한 가지 특징은 접장의 중임(重任) 사례가 보인다는 점이다. 역대 접장 중에서 중임한 인물은 총 7명으로서, 오해보(吳海輔: 1846년, 1847년), 박영신(朴永信: 1848년, 1850년, 1854년, 1855년, 1859년, 1861년, 1867년), 최영화(崔永化: 1849년, 1852년), 송정언(宋正彦: 1851년, 1863년), 김치화(金致化: 1856년, 1862년), 전행문(全行文: 1871년, 1875년), 채영선(蔡永善=蔡永先: 1881년, 1885년) 등이다. 그 중에서 1847년의 오해보와 1855년의 박영신은 연임(連任)의 사례에 해당한다. 연임을 했던 당시의 사정은 아무래도 창설 초기에 조직의 규모가 작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그밖에 1875년의 전행문의 경우에는 반수와 접장을 겸임하였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중임을 했던 7명의 접장 중에서 박영신이라는 인물은 접장으로 지낸

표4- 조직 내 직책의 세분화 추이

위계 구분	시기별 직책 명칭		
	창설 초기	1880년대	1890년대
접장 급	접장(接長: 1845)*, 반수(班首: 1846)	충청우도도반수(忠淸右道都班首: 1883), 영위(領位: 1889), 도반수(都班首: 1889)	명사반수(明查班首: 1891), 부영위(副領位: 1891), 부접장(副接長: 1893), 부반수(副班首: 1894), 시영위(時領位: 1897), 시재반수(時宰班首: 1899)
공원 급	상공원(上公員: 1845)*, 유사(有司: 1845)*, 공원(公員: 1846), 문서공원(文書公員: 1849), 서기(書記: 1864)	서기공원(書記公員: 1882), 수전유사(收錢有司: 1883), 임전유사(任錢有司: 1883), 본방(本房: 1885)**, 공사장(公事長: 1888), 도공원(都公員: 1888), 명사장(明事掌: 1889), 재무원(財務員: 1889), 부공사원(副公事員: 1889), 별공원(別公員: 1889), 부임(副任: 1889)	도명사장(都明查長: 1893), 도공사장(都公事長: 1893), 부장무원(副掌務員: 1893), 한산도공원(閑散都公員: 1896)**, 산도공원(散都公員: 1897)
집사 급	집사(執事: 1845)*		도집사(都執事: 1892)
동몽 급	동몽(童蒙: 1846), 대방(大房: 1848), 유사(有司: 1849), 집사(執事: 1849), 공원(公員: 1850)		비대방(俾大房: 1890), 비방(裨房: 1892)

주: 괄호 안의 숫자는 초출(初出) 연도를 가리킨다.

* 1845년 창설 당시의 직책이다.

** 본방과 한산도공원에 대해서는 본문에서의 논의한다.

기간이 도합 7년으로 가장 길다. 박영신이 마지막으로 접장에 재임하였던 1867년은 서울에서 경복궁 중건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 무렵이었다. 당시 작성된 『경복궁영건일기(景福宮營建日記)』에 따르면, 1867년 9월 21일에 “공충도 저산 칠읍 포상(布商) 박영신 등”의 명의로 경복궁 중건을 위해

원납전(願納錢) 200냥이 상납되었음을 알 수 있다.²⁹ 이와 같은 ‘기부’는 박영신 개인이나 몇몇 상인이 아닌 저산팔읍 보상의 ‘조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박영신은 1867년 당시의 접장으로서 이름을 밝힌 것일 뿐이다. 이처럼 접장은 대외적으로 조직을 대표하여 단체 행동을 주도하는 존재였다.

다시 표4로 돌아가서, 시기별로 새롭게 등장한 여러 직책 중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으로서, 1880년대의 본방(本房)과 1890년대의 한산도공원(閑散都公員)을 꼽을 수 있다. 본방은 원흥주육군 상무사의 경우 각 임소(任所)의 대표자로서, 공원 급의 최상위 직책이었으며, 예덕상무사의 경우에도 유사한 지위에 해당하였다. 원흥주육군 상무사에서 본방이 비교적 초기부터 확인되고, 소규모 장시의 지역명과 ‘본방’이 결합되어 사용된 용례도 많았던 것에 비한다면³⁰, 저산팔읍 상무우사의 본방은 뒤늦게 등장한 데다, 지역이 아닌 전호가 추기(追記)된 용례가 대부분이다.³¹ 원흥주육군 상무사

표5- 저산팔읍 상무우사의 「선생안」 재구성

연도	접장	연도	접장	연도	접장	연도	접장	연도	접장
1845	李直偶	1856	金致化*	1867	朴永信*	1878	沈乃裕	1889	李守五
1846	吳海輔*	1857	盧士玄	1868	權德三	1879	安正甫	1890	沈永俊
1847	吳海輔*	1858	崔致弘	1869	朴平心	1880	朴宗漢	1891	黃世春
1848	朴永信*	1859	朴永信*	1870	金致元	1881	蔡永先*	1892	廉景順
1849	崔永化*	1860	金士圭	1871	全行文*	1882	趙先敬	1893	崔燾旭
1850	朴永信*	1861	朴永信*	1872	趙允五	1883	白逸瑞	1894	金士安
1851	宋正彦*	1862	金致化*	1873	劉文化	1884	梁致瑞	1895	金致萬
1852	崔永化*	1863	宋正彦*	1874	尹敬信	1885	蔡永善*	1896	陸萬餘
1853	金應環	1864	梁永淑	1875	全行文*	1886	金伯春	1897	李允弼
1854	朴永信*	1865	朴永瑞	1876	朴永潯	1887	崔聖守	1898	金學瑞
1855	朴永信*	1866	金寅風	1877	盧千汝	1888	崔明化	1899	崔昌均

주: * 중임(重任)의 사례.

29 서울역사편찬원, 『국역 경복궁영건일기 2』(서울역사편찬원, 2019), 326쪽.

30 조영준(2009), 앞의 논문, 61쪽.

31 백목전(白木廛), 청저전(靑苧廛), 남초전(南草廛) 등.

에서 전호와 결합된 사례가 20세기 들어서야 보인다는 점과 대조적이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전반적으로 저산팔읍 상무우사의 본방은 타 지역의 본방에 비해 위상이 그다지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산도 공원과 같이 직책 명에 ‘한산(閑散)’이 덧붙여지는 사례는 보부상 조직에 관한 초기 연구에서 간혹 언급되곤 하였으나, 얼마나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지에 대해서는 실증적 근거를 찾기가 어려우며, 그러한 사정은 저산팔읍 상무우사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V. 구성원의 양적 변동

이상에서 고찰한 구성원의 직책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조직의 인원에 대해서 양적으로 분석해보도록 하자. 1845년부터 1899년까지 약 55년 동안에 걸쳐 『청금록』에 기재된 전체 인원을 연인원으로 추산하면 2,864명으로 파악된다. 이 인원수가 충청남도의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없다. 종래에는 각각의 조직을 상호 비교하는 차원에서 규모에 대한 실증적 접근이 이루어진 바 없었기 때문이다. 최근 진전된 연구 성과에 따르면, ‘같은 기간’에 있어서 예덕상무사의 연인원이 1,580명³², 원홍주육군 상무사의 연인원이 2,305명³³이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므로 저산팔읍 상무우사의 사례가 당대의 충청남도에서 보부상 조직으로서의 최대의 규모였던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와 같이 각 지역별로 서로 다른 성격의 자료에 기재된 인원을

32 조영준(2020), 앞의 논문, 257쪽.

33 원홍주육군 상무사의 『청금록』에서 파악한 수치.

단순히 비교하는 데에는 문제점이 있다. 지역에 따라서는 연도가 누락된 사례가 더 많은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저산팔읍 상무우사의 『청금록』은 상대적으로 연도의 결락이 적은 편이지만, 원홍주육군 상무사의 경우, 『청금록』에 1852-1865년 등의 연도가 누락되어 있다. 예덕 상무사의 경우에는, 『청금록』이 현존하지 않아 「좌목」만으로 집계하였기에, 누락의 정도가 더 심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누락 연도를 감안해야 함을 충분히 인식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을 찾기는 쉽지 않다.

그러므로 연인원이나 평균값보다는 최댓값이 중요하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청금록』은 총회 때에 작성된 일종의 방명록 또는 출석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래 회원이 분명한 사람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총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을 테고, 그런 사람들이 『청금록』에 누락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완비도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물론 접장 급의 경우에는 기재 누락이 거의 없었으리라 생각할 수 있다. 『청금록』의 완비도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재된 인원 정보가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며, 비슷한 시기에 멤버십을 가진 조직 구성원의 최소 인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³⁴

저산팔읍 상무우사의 인원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동하였는지를 살펴본 것이 그림4이다. 이 그림에 제시된 연도별 인원 중에서 최댓값은 1889년의 322명이며, 이 최댓값 역시 다른 지역과 비교해볼 때 2배 이상에 달하는 것이다. 예덕상무사와 원홍주육군 상무사에서는 최댓값이 각각 150명과 146명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저산팔읍 상무우사의 조직이 충청

34 이와 관련하여 조영준(2009), 앞의 논문, 56쪽을 참조하라.

남도에서 가장 큰 규모였음이 분명함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림4를 통해 전체 인원의 장기적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증가 추세가 관찰됨은 분명하다. 특히 1880년대에 추세선의 곡률(曲率)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므로 구조적 변동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앞서 표4를 통해 살펴보았던 조직 내 직책의 가짓수 변화(증가)와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에 해당한다. 저산팔읍 상무우사의 인원수 증가 추세는 (비록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원흥주육군 상무사와는 유사한 면이 있다.³⁵ 하지만 예덕상무사의 경우에 확대 추세가 발견되지 않는 것과는 대조적인 데³⁶, 이는 『청금록』과 「좌목」이라는 자료 성격상의 근본적 차이에 따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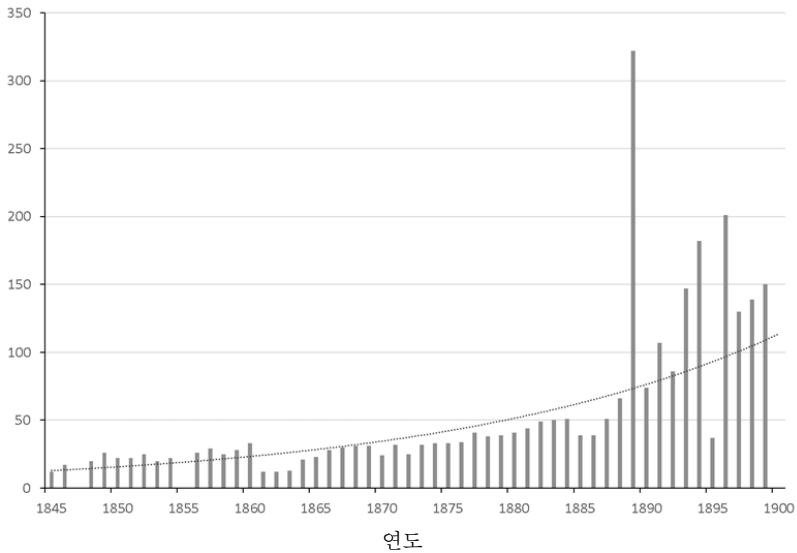


그림4-『청금록』에 기재된 인원수, 1845-1899 (단위: 명)

주: 점선은 추세선이다.

35 조영준(2009), 위의 논문, 5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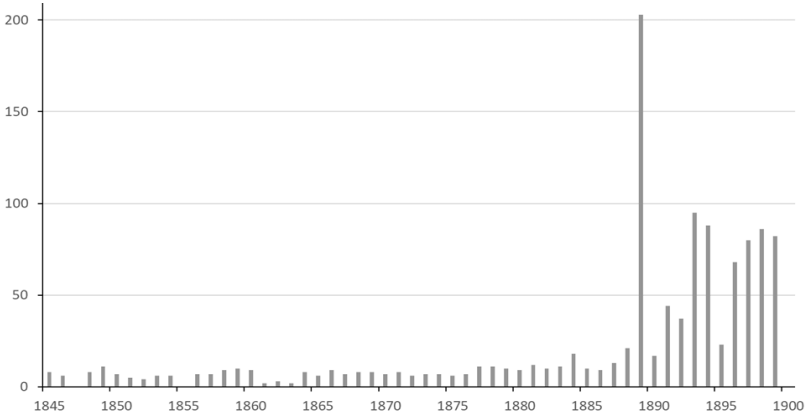
36 조영준(2020), 앞의 논문, 257-258쪽.

(a) 접장 급



연도

(b) 공원 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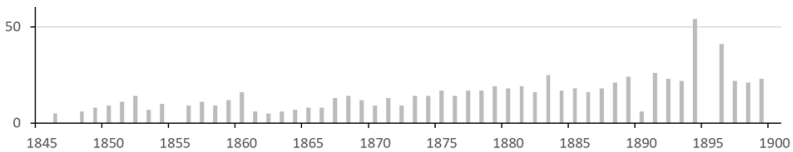
연도

(c) 집사 급



연도

(d) 동몽 급



연도

그림5-『청금록』에 기재된 인원의 위계별 추이, 1845-1899 (단위: 명)

장기적 증가 추세의 근본적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전체 인원에 4단의 위계 구분을 적용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그림5는 접장 급(a), 공원 급(b), 집사 급(c), 동몽 급(d)의 네 가지로 위계를 나누어, 각각의 인원을 1845-1899년 동안에 대해 정리한 것이다. 인원 변동이 심한 쪽이 공원 급(b)임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접장 급(a)에 있어서도 후대에 인원의 증가가 이루어짐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접장을 역임한 자가 누적되면서 반수(班首) 또는 그 이상의 고문직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집사 급(c)과 동몽 급(d)에서도 증가 추세가 보이지만, 연도별 최대 인원이 50여 명에 불과하여 공원 급(b)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변동이 적다. 결국 전체 인원의 증가 추세를 견인한 것이 공원 급(b)임이 확연히 드러나는 것이다

공원 급(b)의 인원이 증가하게 된 이유와 관련하여, 1880년대부터 보상·부상 조직이 중앙에 의해 관리되기 시작하였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보상·부상 조직이 더 이상 순수한 상인의 단체가 아니라 정치성을 강하게 띠게 되면서, 가입에 따른 부수적 이익을 노리고 상인이 아닌 자들이 가입하는 사례가 대거 늘어나기 시작했던 것이다. 앞에서 1880년대 이후의 『청금록』에 ‘양반’이 기재되는 사례가 늘어났음을 확인한 것과 관련하여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갑자기 늘어나는 인원이 왜 집사 급(c)이나 동몽 급(d)이 아닌 공원 급(b)에 집중되었을까? 이는 일종의 엽등(鰲等) 현상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조직의 질적 변화에 따라 종래 유지되어 왔던 멤버십의 획득 및 승진과 관련한 규정 역시 크게 변화하거나 무시되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 집사 급(c)에서 공원 급(b)으로, 공원 급(b)에서 접장 급(a)으로 연결되는 순서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공원 급(b)으로 가입하는 사례가 다수를 점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처음부터 공원 급(b)으로 영입된 자들은 단순한 ‘공원’이 아닌 ‘특별

한 공원의 직책을 부여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전체 인원이 최댓값을 보였던 1889년에 대해 공원 급(b)의 203명을 직책별로 나누어 본 그림6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림6에 따르면, 공원 급(b)의 인원 203명 중에서, 재무원이 30%, 부공사원이 23%, 별공원이 18%, 도공원이 12%, 서기가 8%, 본방공원이 5%, 부임이 2% 등이며, 이름 그대로의 단순한 ‘공원(公員)’은 단 2명에 불과했다. 이는 조직의 성격이 변화하면서 ‘예외적’ 가입이 증대되어, 기존에 없던 자리를 만들어준, 이른바 위인설관(爲人設官)의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예덕상무사의 경우에도 ‘공원’이 아닌 ‘별공원(別公員)’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저산팔을 상무우사와는 반대로 1880년대에 들어서 인원수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좌목」이라는 자료의 성격으로 인한 것인데, 조직의 멤버십에 대한 관리가 부실해지면서 위계가 높은 직책에 대해서만 최소한의 기재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 바 있다.³⁷ 결국 중앙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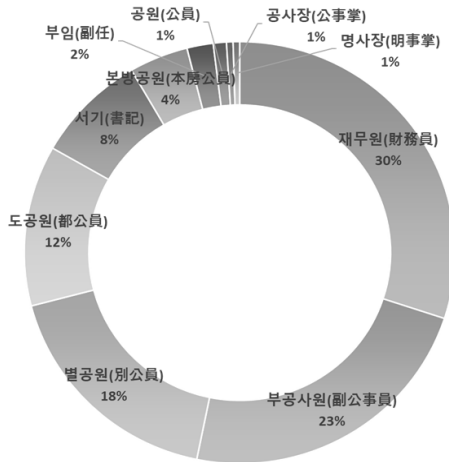


그림6-공원 급의 세부 구성, 1889

37 조영준(2020), 위의 논문, 264-265쪽.

직과의 연관 속에서 조직의 성격이 바뀐 결과가 충청남도 각 지역의 보상·부상 조직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VI. 구성원의 연속성 검토

『청금록』에 기재된 인원의 수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였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과연 개별 구성원들의 멤버십은 얼마나 연속적이었을까? 연속성의 검증을 위해서는 전체 인원 2,864명을 순인원으로 계산하여 각 인원의 출현 빈도를 계산할 필요가 있다. 순인원을 헤아려 보면 1,904명이며, 이는 예덕상무사의 1,054명³⁸에 비해 약 1.8배에 해당한다. 순인원의 계산 과정에서 서로 다른 한자가 사용된 경우에도 한글명이 같으면 동일 인물로 판단하여 계산하였으므로, 동명이인의 사례를 배제할 수는 없다. 『청금록』 기재 인원을 순인원으로 파악하여 각각의 출현 빈도별로 정리하면 표6과 같다.

표6에 따르면 순인원 1,904명 중에서 단 1회만 (즉, 단 1개 연도에만) 『청금록』에 기재된 사람이 1,405명으로서 약 73.8%를 차지한다. 3회 이하 출현한 인물을 모두 합하면 1,794명으로서 전체의 약 94.2%에 달한다. 『청금록』의 인물 대부분이 일시적으로 등장하는 데 그치고 있는 것이다. 같은 기간의 예덕상무사에 대한 분석에서도, 1회 등장하는 사람이 약 69.1%, 3회 이하 등장하는 사람이 약 95.4%였으므로³⁹, 대략적으로 비슷한 현상이 두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고 있는 것이다.⁴⁰ 이러한 현상을 근거로

38 조영준(2020), 위의 논문, 258쪽.

39 조영준(2020), 위의 논문, 258-259쪽.

40 원흥주육군 상무사에 대한 기존 연구는 분석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다.

표6- 『청금록』에 기재된 순인원의 출현 빈도

출현빈도(회)	인원(명)	비율(%)	누적인원(명)	누적비율(%)
1	1,405	73.8	1,405	73.8
2	290	15.2	1,695	89.0
3	99	5.2	1,794	94.2
4	55	2.9	1,849	97.1
5	21	1.1	1,870	98.2
6	13	0.7	1,883	98.9
7	9	0.5	1,892	99.4
8	6	0.3	1,898	99.7
9-17	6	0.3	1,904	100.0
계	1,904	100		

주: 출현빈도의 평균값은 1.50회임.

하여 조직 구성원의 멤버십에 지속성이 거의 없었다고 판단해도 좋을까? 아니면 반대로 『청금록』이라는 자료가 멤버십의 증빙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출현 빈도가 멤버십의 지속성에 대한 지표로서 부적합한 것은 자연스러운 귀결인 것일까?

『청금록』에 내재된 기재의 특성을 한계로서 인정하면서도, 출현빈도가 과연 조직 구성원의 지속성에 대한 지표로서 기능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각 구성원의 ‘근속연수’를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표7은 기존 연구와 동일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청금록』에 기재된 순인원의 근속연수를 계산하여 정리한 것이다.⁴¹

41 조영준(2020), 앞의 논문, 258-259쪽에서 “개개의 구성원에 대한 근속연수의 실체를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기록된 연도를 모두 추출하여 최댓값과 최솟값을 구하고, 양자의 차이를 구하는 방법을 통해 근속연수의 대리변수(proxy)를 구할 수 있다. 이는 실제의 근속연수와는 물론 다른 것이지만, 근속연수의 최솟값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충분한 의의를 가진다.”고 전제하였으며, 이 논문에서도 동일한 방법론을 적용하였기에, 이하의 2개 단락에서 별도의 인용 표시를 하지 않았음을 밝혀둔다.

표7- 『청금록』에 기재된 순인원의 근속연수

근속연수(년)	인원(명)	비율(%)	누적인원(명)	누적비율(%)	근속연수(년)	인원(명)	비율(%)	누적인원(명)	누적비율(%)	근속연수(년)	인원(명)	비율(%)	누적인원(명)	누적비율(%)
1	1,425	74.8	1,425	74.8	13	6	0.3	1,846	97.0	25	2	0.1	1,887	99.1
2	119	6.3	1,544	81.1	14	9	0.5	1,855	97.4	26	1	0.1	1,888	99.2
3	77	4.0	1,621	85.1	15	6	0.3	1,861	97.7	27	1	0.1	1,889	99.2
4	38	2.0	1,659	87.1	16	4	0.2	1,865	98.0	28	2	0.1	1,891	99.3
5	42	2.2	1,701	89.3	17	2	0.1	1,867	98.1	29	2	0.1	1,893	99.4
6	32	1.7	1,733	91.0	18	2	0.1	1,869	98.2	30	-	0.0	1,893	99.4
7	27	1.4	1,760	92.4	19	5	0.3	1,874	98.4	31-35	3	0.2	1,896	99.6
8	20	1.1	1,780	93.5	20	2	0.1	1,876	98.5	36-40	4	0.2	1,900	99.8
9	21	1.1	1,801	94.6	21	5	0.3	1,881	98.8	41-45	2	0.1	1,902	99.9
10	21	1.1	1,822	95.7	22	3	0.2	1,884	98.9	46-50	-	0.0	1,902	99.9
11	11	0.6	1,833	96.3	23	-	0.0	1,884	98.9	51-54	2	0.1	1,904	100.0
12	7	0.4	1,840	96.6	24	1	0.1	1,885	99.0	계	1,904	100.0		

주: 근속연수의 평균값은 2.53년임.

표7에 따르면, 순인원 1,904명 중에서 단 1년간 근속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1,425명으로서 약 75%를 차지하며, 이들 인원은 출현빈도가 1회인 인원 1,405명보다 다소 많은 수치를 보이는데, 이는 동일 연도에 2회 이상 중복 기재된 인원이 일부 확인되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중복 기재라기보다는 동명이인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근속연수가 10년 이하인 인물을 모두 합하면 1,822명으로서 전체의 95%를 상회한다. 이는 대부분의 인물들에게 있어서 근속연수를 10년 이상 넘기는 것이 그리 쉽지 않은 일이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표7에서 근속연수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표6에서 출현빈도에 대해 분석한 결과와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러한 관계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만약 출현빈도가 낮은 사람의 경우에 근속연수가 짧은 경향을 보이게 된다면, 이상의 분석이 가지는 의미가 분명해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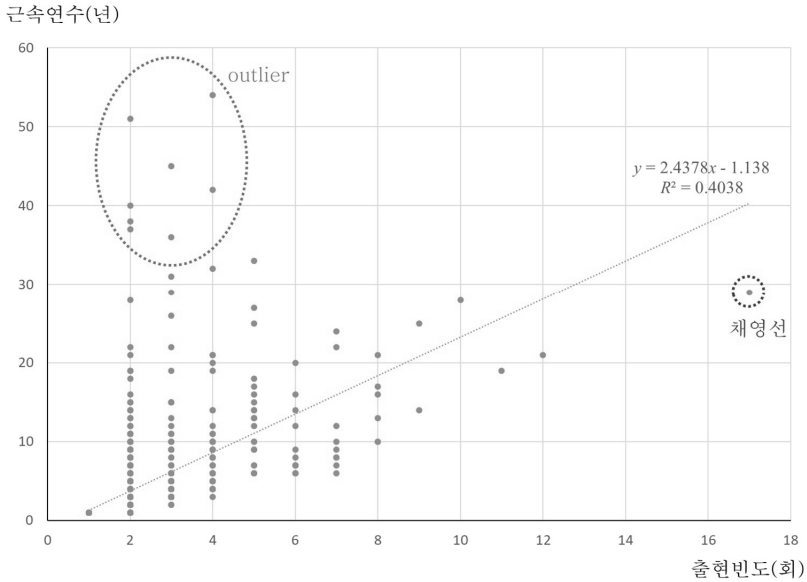


그림7-출현빈도와 근속연수 간의 산포도(散布圖)

것이다. 이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출현빈도와 근속연수 간의 산포도(scatter plot)를 그려본 것이 그림7이다. 그림7에서는 출현빈도가 높을수록 근속연수가 길어지는 양(+)의 상관관계가 확인되며, 상관계수(r)를 계산해보면 0.64임을 알 수 있다. 출현빈도가 2-4회인 경우에 근속연수가 30년을 넘는 사례가 보이지만(그림7에서 'outlier'로 표시함), 이들은 동명이인일 가능성이 높다.⁴²

결국, 이상의 분석 결과를 종합해본다면, 조직 구성원의 멤버십이 굉장히 느슨하였다고 볼 수도 있고, 멤버십의 출입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았음을 상정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조직의 구성원 스스로가 의식한 소속감 역시 그다지 강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일반'

42 일부 사례는 한글명이 같고 한자명이 다른 경우로서, 실제로는 동일 인물일 가능성도 있다.

회원의 경우에 국한된 것으로서, 최상위층(우두머리)의 경우에는 사정이 달랐다. 접장을 역임한 자들 중에서 출현빈도가 가장 높은 인물은 채영선이며(그림 7에 별도로 표시함), 박영신과 최돈욱도 오랜 기간 출현하고 있다.

채영선(蔡永善=蔡永先)은 29년간 재임하였으며, 17회 기재되었는데, 유사(有司: 1871년), 공원(公員: 1877년), 접장(接長: 1881년, 1885년), 반수(班首: 1882년, 1886년), 영위(領位: 1889-94년), 도영위(都領位: 1895-99년) 등의 직책을 역임했다. 박영신은 21년 간 재임하였으며, 앞에서도 살펴본 바 있는 접장(接長: 1848년, 1850년, 1854년, 1855년, 1859년, 1861년, 1867년)을 비롯하여 반수(班首: 1849년, 1851년, 1856년, 1860년, 1862년, 1868년)까지 역임하였다. 최돈욱(崔墩旭=崔墩郁)은 7년 간 재임하였으며, 접장(接長: 1893년), 반수(班首: 1894년), 영위(領位: 1895-96년), 시영위(時領位: 1897-99년)를 역임했다.⁴³

이들의 접장 급 직책에 대한 역임 실태를 보면, 최상위층의 직책이 다변화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를 분명히 하기 위해 접장 급 직책의 변화 추이를 정리해 보면 표8과 같다. 앞에서 논의한 내용을 표8과 결합하여 판단컨대, 1880년대 후반에 영위(領位) 직책을 만드는 것과 조직의 급속한 변화가 궤를 같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3 충청남도 보령시의 주산면(珠山面) 창암리(倉岩里)에서 '전충추원의관은홍산우지사공사원최돈욱기공비(前中樞院議官殷鴻山右支社公事員崔墩郁紀功碑)'라고 새긴 비석이 2012년에 발견되었다. 이 비석은 1902년에 건립된 것으로서, "남포현 지역의 유림이며 은홍산우지사의 공사원이었던 최돈욱(崔墩郁, 1842-1910)이 시장을 관리하며 정직한 상거래를 주도하고 동학란이 일어나자 동학도를 회유하고 유회군을 조직해 남포 지역의 동학군을 물리치는 데 공을 세워 홍주목사 이승우로부터 포상을 받았으니 길이 그 공을 전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한다. 「보령지역 조선말기 보부상 활동 관련 비석 발견」, 《뉴시스》, 2012년 3월 21일자.

표8- 접장 급 직책의 시기별 구성

연도	직책 구성	연도	직책 구성
1845	접장	1893	영위-도반수-반수-접장-부접장
1846-1882	반수-접장	1894	영위-도반수-반수-접장-부접장(2)-부반수
1883	충청우도도반수-반수-접장	1895	도영위-영위-명사반수-반수-부반수(2)-접장-부접장(2)
1884-1888	반수-접장	1896	도영위-영위-도반수-반수-접장-부반수(2)-부접장(2)
1889	영위-반수-접장-도반수	1897	도영위-시영위-반수-접장-부접장(4)
1890	영위	1898	도영위-시영위-반수-부반수-접장-부접장(4)
1891	영위-반수(2)-명사반수-접장(2)-부영위	1899	도영위-시영위-시재반수-접장-도반수(8)
1892	영위-반수-접장		

주: 괄호 안의 숫자는 2명 이상인 경우의 인원을 가리킴.

VII. 조직의 성격에 대한 역사적 평가

이 논문에서는 저산팔읍 상무우사의 인원 명단인 『청금록』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해석하고자 하였다. 조직의 결성은 1840년대였지만, 대략 1880년대부터 그 운영상에 변화가 있었으며, 이는 구성원의 질적·양적 변동 양상을 통해 확인된다. 또한 그러한 변화는 보상·부상의 지역별 조직이 중앙조직과 결부되어 전국적으로 정치 세력화하는 과정과 연계하여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예덕상무사나 원홍주육군 상무사 등 충청남도의 다른 지역과 비교하더라도 대동소이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세기 후반의 보부상 조직에 관한 최근 연구의 평가를 일반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한 것으로서, 앞으로는 관련 연구를 충청남도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까지 추가로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끝으로, 충청남도 지역의 각 사례에서 1880년대 이후에 공통적으로 확인

되는 성격의 변질과 관련하여, 저산팔읍 상무우사의 사례에서 찾을 수 있는 특징을 한 가지 짚어두고자 한다. 저산팔읍 상무우사에서는 조직의 창설로부터 그 성격의 변질에 이르기까지 약 40년 정도가 경과하였는데, 당초의 설립 목적이 무엇이었던 간에 거기에 부합하는 조직 운영이 1880년대 이후에도 장기적으로 얼마나 잘 이루어졌는지는 단언하기가 쉽지 않다. 조직의 운영이 1880년대 들어 변질되기 시작했던 것은 분명하므로, 결국 본래의 기능 역시 제대로 작동한 시기도 1880년대 이전까지였던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부분은 상호부조, 의례 등 호혜(reciprocity)와 관련된 사항이 얼마나 잘 작동하고 있었는지에 관한 것이다. 하지만 부조금의 수취 내역이나 지급 결과를 보여주는 실례를 찾을 수는 없다. 하지만 구성원의 다자간 징벌(multilateral punishment)과 관련한 기능이 조직 결성 당시와 달리 소멸되어갔음은 분명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현존하는 저산팔읍 상무우사의 자료 중에서 벌목(罰目) 성격을 띠는 내용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에 국한된다. ① 술주정하거나 횡포를 부려서 노소를 분간하지 못하는 무리들은 곤장 40대로 처결한다. ② 억지로 강매하거나 흥정하는 무리들은 곤장 30대로 처결한다. ③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하는 무리들은 곤장 20대로 처결한다. 그런데 이들 조목(條目)은 모두 1845년 창설 무렵의 소지(所志)에서 집중적으로 확인되며, 그 뒤에는 1855년의 소지에 일시적으로 관련 내용이 보이고 있을 뿐이다.⁴⁴ 그 밖의 자료에서는 조직 내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처벌과 관련된 사항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44 조영준·김봉좌·오창현 역해(2019), 앞의 책, 26-27쪽.

종래의 일반적 인식 중에는, 1899년대에 설립되었다가 1904년에 폐지되어 사라진 상무사(商務社) 및 그 후신(後身)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 시기의 보상·부상 조직이 가지는 역사성을 평가하려 한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이 논문의 분석을 통해 그러한 접근을 해서는 곤란함을 알 수 있으며, 시기별·지역별 구분을 전제로 하여 개별적 특수성을 검출하는 데 주력하는 편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한 연구가 축적되는 과정에서 일반화 가능한 명제를 다시금 도출할 수 있을 것이며, 20세기의 '상무사'에 대한 재평가 역시 마찬가지로 관점에서 실증적으로 수행되어야 하겠다.

참고문헌

1. 1차 자료

『林園經濟志』.

「差定帖」. 苧産八邑 商務右社.

『靑襟錄』(寫本). 苧産八邑 商務右社.

『靑衿錄』. 元洪州六郡 商務社.

2. 단행본

朴元善, 『負襍商: 韓國 商法史上의 行商制度研究』. 韓國研究院, 1965.

서울역사편찬원, 『국역 경복궁영건일기 2』(서울사료총서 16). 서울역사편찬원, 2019.

劉元東, 『李朝後期 商工業史 研究』. 韓國研究院, 1968.

_____, 『韓國近代經濟史研究』. 一志社, 1977.

조영준·김봉좌·오창현 역해, 『장돌뱅이의 조직과 기록: 저산팔읍 상무우사 편』.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9.

조영준·심재우·양신아·전경목 역해, 『장돌뱅이의 조직과 기록: 예산·덕산·면천·당진 편』.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5.

3. 논문

劉教聖, 「忠清右道苧産八區 商務社右社: 李朝末期 襍負商의 組織과 機能에 對한 一考察」. 『歷史學報』 10輯, 1958, 167-196쪽.

조영준, 「19-20세기 보부상 조직에 대한 재평가: 元洪州六郡商務右社를 중심으로」. 『경제사학』 제47호, 2009, 39-77쪽.

_____, 「조선후기 行商 조직의 座目과 인원 변동: 禮德沔唐과 京都所·京都廳의 사례」. 『藏書閣』 제44집, 2020, 280-315쪽.

4. 신문기사

「보령지역 조선말기 보부상 활동 관련 비석 발견」, 《뉴시스》, 2012년 3월 21일자.

국문초록

이 논문에서는 저산팔읍 상무우사의 『청금록』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19세기 후반의 인원 구성과 변동 실태에 접근하고자 하였다. 『청금록』은 비록 방명록 또는 출석부 성격의 자료로서, 조직의 전체 인원을 포괄하는 명단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분석의 유용성을 확보할 수 있다.

저산팔읍 상무우사는 봇짐장수인 ‘보상’의 조직이지만, 단순한 행사보다는 좌고의 단체라고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청금록』에 기재된 전호(塵號)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나, 장기에 걸쳐 전호의 연속성이 확인되지는 않는다. 직책 명칭의 변화와 인원수의 변동을 통해, 조직의 성격이 1880년대에 들어 단절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저산팔읍 상무우사가 당대의 충청남도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조직이었음을 새롭게 밝힐 수 있었다. 또한 1880년대에 들어 새롭게 유입된 인원은 본래부터 정해져있던 승진 절차나 관례와 관계없이 새로운 직책을 부여받았으며, 이는 순수한 상인이 아닌 자들이 중앙조직과의 관계나 정치적 이해관계 등을 고려한 부차적 이익을 노리고 참여하였기 때문으로 해석되었다.

구성원이 『청금록』 상에 출현하는 빈도나 근속연수 등의 수량 지표를 통해 분석한 결과를 통해, 멤버십이 상당히 느슨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 역시 부실하였을 가능성이 높음이 지적되었다. 이와 같은 특징은 멤버 상호간의 처벌을 규정한 사항이 1855년 이후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통해서도 지지된다.

투고일 2020. 9. 14.

심사일 2020. 10. 30.

게재 확정일 2020. 11. 5.

주제어(keyword) 순회상인(itinerant traders), 좌고(stallholders), 구성원 명단(list of members), 길드(guild), 저산팔읍(the Eight Ramie Producing Counties)

Abstracts

Understanding the Traditional Community of Peddlers and Stallholders: An Empirical Case Study of the Eight Ramie Producing Counties

Cho, YoungJun

Previous studies on the organization of peddlers in late Chosŏn Korea did not provide sufficient evidence-based analysis. In this paper, Ch'ŏnggŭmnok of the peddlers' community in the Eight Ramie Producing Counties was analyzed intensively to approach the actual management of peddlers' organizations in Ch'ungch'ŏngnam province in the late 19th century. Ch'ŏnggŭmnok is not without the usefulness of the analysis, although it is difficult to call it a list covering the entire number of people in the organization, as data in the nature of the guest book or attendance book.

The peddlers' community in the Eight Ramie Producing Counties was an organization of 'peddlers', but it is hard to say that it was an organization of 'real' peddlers, as is commonly understood, and it was also understood as a community of stallholders. These characteristics can be inferred from the stall names listed in Ch'ŏnggŭmnok. However, the continuity of stall names over the long term is not confirmed, and this can be seen through quantitative analysis of the number of members. The nature of the organization seems to have been changed from the 1880s, as can be seen by the change in the official titles and the change in the number of people.

In this paper, it was clarified that the peddlers' community in the Eight Ramie Producing Counties was the largest organization of merchants in Ch'ungch'ŏngnam province at the time. In addition, in the 1880s, the newly introduced personnel were given new positions regardless of the originally set promotion procedures or practices, as nonmerchants participated in the community for secondary interests in consideration of their relationship with the central organization or political issues.

Therefore,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membership was quite loose and that the sense of belonging to the community was also poor, unlike what had been understood previously, as shown by the analysis of the quantity index such

as frequency of entry and participation duration on Ch'ōnggūmnok. This feature is also supported by the fact that the provisions for the punishment between the members have not been found since 1855.